

등록번호	감사담당관-870
등록일자	2015. 1. 28.
결재일자	2015. 1. 30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감사팀장	감사담당관	부구청장	구청장
최지영	황치문	이수원	조인동	01/30 문석진
협 조	★인사팀장 행정지원과장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팀장	이현 오남희 최선희 송응섭	주민자치국장	이경현

- 내부통제시스템의 안정화와 주민 눈높이에 맞춘 투명·책임행정 구현 -

2015년도 감사 운영계획

추진근거	대내(외) 협력 현황			사업비
	기관·부서·단체명	협약내용	협약결과	
·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 · 서대문구 자체감사 규칙 제31호	행정지원과	감사담당자 우선 선발 및 우대	협약	없음

서 대 문 구
감사담당관

— 목 차 —

I . 2014년도 성과 및 과제	1
1. 주요성과	1
2. 감사 실시현황	2
3. 한계 및 과제	3
II . 2015년도 추진목표 및 방향	3
III . 2015년도 추진계획	4
1. 자체감사 운영계획	4
2. 내부통제 활동(사전예방감사)	7
3. 감사지적사례 재발방지	10
4.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	11
5. 감사 거버넌스 구축	13
IV . 행정사항	15
붙임 : 1. 2015년도 월별 감사계획	16
2.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지표	17

1. 주요 성과

- 서울시 자치구 종합청렴도 평가 우수구 및 청렴활동 평가 2년 연속 “우수구” 수상에 기여
 - 자체감사활동 실적(20%), 청렴활동 평가(30%), 응답소 현장운영실적(25%),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(25%)
- 총 12회 중 9회 종합·특정·집행전말감사 결과(3회는 처분중)
 - 지방세 추징, 예산 환수 등 재정상 조치 : 4,211천원
 - 불합리한 업무 개선요구, 권고 : 28건
 - 잘못된 업무처리 적출 : 시정·주의 108건(신분상조치 65명)
- 감사를 통한 성과
 - 사전예방 감사활동 강화
 - 재정관리시스템(e-호조) 상시 모니터링 감사 : 조치 12건
 - 업무추진비 공개내역 모니터링 : 조치 98건
 - 클린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 : 부적정 건수 59건
 - 민선6기 출범전 감사사각지대 감사실시
 - 선거 관련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서 감사실시 : 정책기획담당관, 문화체육과, 홍보과
 - 구의회사무국 최초 감사실시 : 2013년 자체감사규칙 개정에 의거 감사대상기관에 포함된 구의회사무국 감사
 - 부적정한 관행을 근절하고 합리적이고 적법한 방안 마련
 - 법인카드 사용실태 모니터링 중 부적절한 피복비 지출내역확인
 - 자체감사 이래 최초로 전 부서 피복비 집행실태 감사실시 (주의·개선요구 : 9개부서, 신분상조치 : 53명)
 - 피복비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한 기준 신설(정책기획담당관) (‘연도별 예산편성 기준 경비’에 피복비 단가 기준과 사용기한 등 피복비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위한 기준 신설)

○ 감사지적사항 재발방지

- 감사지적사례 교육 : 청렴교육 4회 846명
- 예산·회계분야 감사사례집 제작 전부서 배포(2014년 8월)
- 마감회의, 간담회 등을 통한 감사결과 및 지적사항 재발방지대책 공유

○ 감사 역량 강화

- 감사담당자 감사전문교육 : 연간 평균 20시간 이상 이수
(22명 617시간, 1인평균 28시간)
- 외부전문가 초청 교육 : 회계분야 전문가 초청 교육실시(1회 22명)

2. 감사 실시현황

구분	감사대상	감사기간	합계			시정	주의	개선요구	권고	모범사례	비고
			총건수	신분상조치(명)	재정상조치금액(천원)						
합 계			146	65	4,211	22	89	16	15	4	
종합감사	홍보과	3.26.~4.8.	22	3	1,742	5	13	2	1	1	
	정책기획담당관	4.9.~4.22.	26	2	2,003	4	16	2	3	1	
	구의회사무국	4.29.~5.13.	20	3	400	4	16				
	문화체육과	6.27.~7.11.	21	2	-	1	16		3	1	
	지적과	8.25.~9.5.	11	2	-	3	7	-	-	1	
	북아현동, 홍제1동, 홍은1동, 북가좌1동	11.17.~12.11.	(처리중)								
특정감사	재활용센터 민간위탁사무	2.19.~2.21.	7			4			3		
	국민불편 인허가 특별감사(전부서)	5.1.~5.20.	5				3	1	1		행자부 요구
	피복비집행실태(전부서)	6.5.~6.27.	20	53	-	-	9	11	-	-	
	구내식당 지원 예산 집행실태(18개부서)	9.16.~9.22.	14	-	66	1	9		4		서울시 요구
	세외수입감사(전부서)	10.13.~11.5.	(처리중)								
감사결과 이행실태(2013~2014년도 수감부서)	2013.12.30.~1.15.	처분요구사항 151건 (조치완료 148건, 미완료 3건)									
일상감사(전부서)	연중	실적없음									

3. 한계 및 과제

- 무리한 감사일정과 사전준비 부족 등으로 감사목적 달성 미흡
 - 재정상조치 및 징계요구 실적 미흡
- 주민 참여 및 협력 감사시스템 부족
 - 제 식구 감싸기 등 감사행정에 대한 오해 불식 및 신뢰 확보필요
- 일상감사에 대한 부서들의 관심부족 및 감사대상 범위 협소로 일상감사 실적 저조
- 감사결과 체계적 이행관리 미흡
 - 처분요구후 조치사항 확인결과 이해부족으로 처분요구와 달리 집행되거나 업무과다 등을 이유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 발생
- 감사결과 공개 및 주요성과 홍보 강화

II 2015년도 추진목표 및 방향

□ 추진목표

내부통제시스템의 안정화와 주민 눈높이에 맞춘 투명·책임행정 구현

- 사후통제 및 사전예방기능 수행으로 행정의 책임성 확보
- 자체감사활동 강화 및 감사를 통해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
- 제도·시스템을 통한 내부통제와 지적사례 재발 방지
- 주민의견 수렴 및 감사결과 공개, 홍보 강화

내부통제시스템의 안정화와 주민 눈높이에 맞춘 투명·책임행정 구현

자체감사 운영	내부통제 활동 (사전예방감사)	감사지적사례 재발방지	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	감사 거버넌스 구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감사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미수감 기관 위주 종합감사 ✓효율적인 감사 운영 및 결과처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주요시책 지원 및 생산적인 감사 -감사결과 보고의 적시성실효성 제고 ✓감사담당자 역량 강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일상감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주요정책, 예산 집행 등 사전검증 ✓재정관리시스템 (e-호조) 상시 모니터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회계비리 사전예방 ✓업무추진비 공개 및 클린카드 모니터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감사 지적사례 재발방지 대책 ✓감사사례집 제작 배포 ✓지적사례 재발방지 교육 실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적극행정 면책 ✓경미한 지적사항 현지조치 확대 ✓무사안일 근무행태 감사 및 처분 강화 ✓업무추진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발굴, 격려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주민의견 수렴 및 공개, 홍보 강화 ✓구민명예감사관 감사 참여 ✓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✓수감기관과의 소통 강화 ✓서울시·자치구 감사기구와의 협력 강화

Ⅲ 2015년도 추진계획

1. 자체감사 운영계획

- 감사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미수감기관 위주 종합감사 실시
- 효율적인 감사운영 및 결과 처리
- 감사과정에 주민참여 확대
- 감사담당자 역량 강화

□ 연간 감사계획

○ 감사대상 및 시기

구분	선정기준	감사대상	감사중점 및 내용	시기
종합 감사	미수감 부서 및 민원부서	청소행정과	- 각종 사업 추진 및 민원처리 실태 - 보조금 등 예산집행 실태 - 기타 조직운영 등 업무전반	3월
		건설관리과		9~10월
		환 경 과		11월
	감사주기 도래 (3년)	신촌동, 홍제2동, 홍은2동, 남가좌1동		6월
특정 감사	민간위탁사무 실태 점검결과 감사가 필요한 분야	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위주 선정 (실태점검후 선정)	- 민간위탁 추진 업무 전반 -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이행 실태 등	4월~5월
	민간위탁사무 실태 점검	해당부서	- 민간위탁사무 실태 및 소관부서의 지도점검, 감사 실태 등 점검	2월
	감사 처분요구사항 이행 실태 감사	2014~2015년도 수감부서	-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이행결과 확인	12월~ '16.1월

○ 감사범위 : 2013년도 ~ 감사일 현재, 감사분야별 대상 업무

- 클린카드 모니터링 및 업무추진비 공개 업무 감사 제외(별도 점검)
- 감사원·서울시에서 감사한 사항과 자체감사(특정감사)시 감사한 사항 제외

○ 감사인원 : 감사팀 7명 내외

- 필요시 감사팀 외 직원 및 구민명예감사관, 외부전문가 등 참여

□ 효율적 감사운영 및 결과처리

○ 효율적이고 및 생산적인 감사 실시

- 감사주기 및 감사대상 조정, 사전준비 강화(예비감사기간 확대)

- 선정된 핵심 사안에 감사역량 집중
- 문제해결과 불합리한 제도·관행 개선 중점
- ‘감사결과 처분심의회’ 운영으로 처분의 객관성·공정성 도모
 - 감사담당관 팀장 등으로 심의회 구성
 - 감사종료 후 15일 이내 운영으로 신속한 처분결정
 - 처분심의회 의결로 감사결과 처분 및 신분상 조치 양정 결정
- 감사결과 보고의 적시성, 실효성 제고
 - 감사결과 보고 : 60일 이내(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연될 수 있음)
 - 감사결과 간부회의 보고·공유 : 정책회의, 청렴관계관회의 등
 - 감사결과 내·외부 공개 및 홍보 실시
-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이행관리 강화
 - 수감부서 조치결과 확인, 검토 보고 : 1개월 이내
 - 적정조치사항 완료처리, 미이행 및 부적정 조치사항 재조치 요구
 - 미이행사항에 대하여는 원인분석후 신분상 조치(가중처분)
 - 장기간 소요되는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이행시까지 별도관리
 - 감사결과 처분요구 이행실태 감사를 통해 이행결과 최종 확인

□ 감사담당자 역량 강화

- 감사담당자 감사전문교육 이수
 - 이수시간 : 연간 20시간 이상
 - 교육내용 : 감사실무, 감사사례, 예산·회계실무, 분야별 전문감사기법 등
 - 교육방법 : 감사교육원, 지방행정연수원 등의 관련 교육과정 이수
- 전문강사 초빙 자체교육 : 3회
 - 대상 : 감사담당관 전직원
 - 강사 : 감사·회계 전문가 등 외부강사
 - 내용 : 감사기법, 감사사례, 예산·회계실무 등

○ 부서 세미나 실시 : 월 1회

- 대상 : 감사담당관 전직원
- 내용 : 감사·조사·민원조사·민원처리 사례 공유, 공직윤리 교육 등

○ 감사담당자 우선 선발 및 우대(행정지원과)

- 감사담당자 선발시 자격기준 준수 및 감사담당관 의견 반영
- 감사담당자 장기근속 원칙적 보장(3년이상)
- 감사담당자 전보시 감사담당관 사전협의
- 2년이상 근무자 전보시 본인 희망 우선 고려
- 기타 감사담당자 우대방안 강구

※ 근거 :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(제18조), 시행령(제9조), 서대문구 자체감사규칙(제31조), 자체감사활동개선대책(감사담당관-6081, 2012.8.29)

2. 내부통제 활동(사전예방감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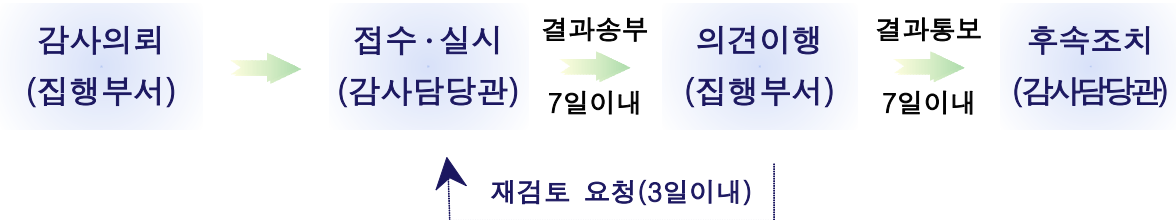
- 일상감사 확대 운영 및 계약원가 심사업무 이관
- 청백-e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
- 재정관리시스템(e-호조) 상시 모니터링 감사
- 업무추진비 공개업무 및 클린카드 모니터링

□ 일상감사 대상업무 확대 운영

- 감사목적 : 주요정책 등의 적법성, 타당성, 경제성 등을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검토·분석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 예방
- 감사내용 : 주요정책, 계약, 예산업무 등의 적법성, 타당성 등 사전검토
- 감사시기 : 최종 결재권자 결재 전
- 감사의견 이행, 누락 여부 확인 :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시 확인, 조치
- 감사대상 및 범위 변경 내역

대상업무	세 부 기 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당초(2015.1.9.이전)	변경(2015.1.9.이후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주요정책의 집행업무	1. 총사업비 기준으로 5억원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신규사업 - 국시비 보조사업 및 서대문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심사대상은 제외	좌 동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계약 업무	○ 공사, 용역, 물품 제조·구매 1. 1건당 추정금액 5천만원이상 수의계약(전자공개수의계약 제외)	○ 공사, 용역, 물품 제조·구매 1. 일상감사 기준금액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공사</th> <th>용역</th> <th>물품 제조·구매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추정금액</td> <td>3억원 이상</td> <td>1억원 이상</td> <td>5천만원 이상</td> </tr> <tr> <td>설계변경</td> <td colspan="3">계약금액 2억원이상 공사의 설계변경 금액이 신규공종의 추가로 당해 계약금액의 10%이상 증가시(설계변경 방침서 또는 보고서 제출)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 colspan="3">설계변경 등으로 최종 계약금액이 일상감사 대상금액을 새로이 초과하게 된 계약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2. 계약원가심사 기준금액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공사</th> <th>용역</th> <th>물품 제조·구매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추정금액</td> <td>2천만원 이상</td> <td>1천만원 이상</td> <td>1천만원 이상</td> </tr> <tr> <td>설계변경</td> <td colspan="3">계약금액 5천만원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%이상 증가하는 경우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 colspan="3">계약금액 5천만원미만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20%이상 증가하는 경우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※ 추정금액 : 도급비, 부가가치세, 관급자재비 금액을 합한 금액 ▶ 계약원가심사 대상이라는 사유로 일상감사를 제외해서는 아니 됨	구분	공사	용역	물품 제조·구매	추정금액	3억원 이상	1억원 이상	5천만원 이상	설계변경	계약금액 2억원이상 공사의 설계변경 금액이 신규공종의 추가로 당해 계약금액의 10%이상 증가시(설계변경 방침서 또는 보고서 제출)				설계변경 등으로 최종 계약금액이 일상감사 대상금액을 새로이 초과하게 된 계약			구분	공사	용역	물품 제조·구매	추정금액	2천만원 이상	1천만원 이상	1천만원 이상	설계변경	계약금액 5천만원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%이상 증가하는 경우				계약금액 5천만원미만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20%이상 증가하는 경우		
구분	공사	용역	물품 제조·구매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추정금액	3억원 이상	1억원 이상	5천만원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설계변경	계약금액 2억원이상 공사의 설계변경 금액이 신규공종의 추가로 당해 계약금액의 10%이상 증가시(설계변경 방침서 또는 보고서 제출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설계변경 등으로 최종 계약금액이 일상감사 대상금액을 새로이 초과하게 된 계약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공사	용역	물품 제조·구매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추정금액	2천만원 이상	1천만원 이상	1천만원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설계변경	계약금액 5천만원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%이상 증가하는 경우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계약금액 5천만원미만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20%이상 증가하는 경우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예산관리 업무	1. 1회에 1억원이상 예산을 전용코자 하는 경우	1. 1회에 5천만원이상 예산을 전용코자 하는 경우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타	1. 표창대상자의 적격성 여부 -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 제11조 제2항에 의할 경우 2. 국내외 장기훈련 신청자의 자격 및 업무 실적 적정성 여부 3. 공무원 50인 이상 참여 또는 1천만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연찬회, 워크숍 4. 국소장 및 담당관이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업 5. 금품수수 사례 발생으로 감사담당관이 지정한 업무	좌 동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○ 절차 및 방법



□ 청백-e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

○ 개 요

- 5대 주요 행정정보시스템(세무종합시스템,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, e-호조, 인사관리시스템, 새올행정정보시스템) 및 민간시스템(금고은행, 카드사)의 자료 연계·통합
- 업무처리시 각 시스템의 개별적 운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행정착오 및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78종의 예방행정 시나리오를 통해 알림서비스 제공

○ 감사대상 : 전 부서(감사담당관 모니터링)

○ 감사기간 : 상시운영

□ 재정관리시스템(e-호조) 상시 모니터링 감사

○ 감사목적 : 예산, 지출 등의 업무를 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하여 사전 위험관리 및 공직비리 예방

○ 감사기간 : 매 익월 15~25일(매월 실시)

○ 감사대상 : 전 부서

○ 감사내용 : 예산, 지출, 계약, 부채 등 7개 분야 39종의 시나리오에 의해 추출된 건에 대한 걱정집행 여부 확인

○ 감사결과

- 결과보고 및 전부서 공유 : 분기별
- 중요 또는 반복 지적사항 처분 강화 : 시정·주의조치, 신분상 조치 및 부서·개인 청렴마일리지 차감

※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인 ‘청백e-시스템’ 운영 안정화 이후, 중복 분야에 대한 향후 별도계획 수립 추진

□ 업무추진비 공개업무 및 클린카드 모니터링

- 목 적 : 예산집행의 적정성·투명성 제고
- 추진시기 : 매분기말 익월(분기별 실시)
- 대 상 : 전 부서
- 모니터링 내용
 - 업무추진비(기관운영, 시책추진) 홈페이지 공개 적정여부
 - 클린카드 사용 적정여부
- 모니터링 결과 : 부적정 사례 발생시 시정조치 등

3. 감사지적사례 재발방지

- 지적사례 재발방지 교육 등 실시
- 감사사례집 제작·배포

□ 지적사례 재발방지 교육 등 실시

- 추진개요
 - 매년 반복지적사례 선정 교육
 - 분야 : 예산회계, 공사집행, 동행정, 행정처분분야 등
 - 지적사례는 내용의 중요도와 지적빈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
 - 재발방지 교육 등 실시 : 교육 및 문서를 통해 전직원이 숙지토록 조치
 - 이후 감사에서 유사·동일 지적사항 적발시 신분상 조치 강화(가중)

○ 2015년도 추진계획

– 추진분야 : 자체감사사례집

– 내 용 : 사례선정 및 사례집 제작(8월), 6급이하 직원 교육(하반기)

□ **감사사례집 제작 .배포**

○ 제작시기 : 2015. 8월

○ 제작분야 : 자체감사사례

○ 제작방법

– 자체감사 및 외부기관 감사 공통지적사례와 관련법규, 규정, 지침 등 수록

– E-Book(PDF파일)으로 제작

○ 활 용

– 전부서 배포 및 서울행정포털 ‘행정정보-감사업무-감사사례’ 게시판 게시, 공유하여 지적사례 재발 방지

– 감사 및 업무매뉴얼로 활용

□ **감사지적사례 재발방지 교육**

○ 추진시기 : 2015. 하반기 청렴교육시

○ 교육대상 : 6급이하 직원

○ 교육내용 : 자체감사지적사례

4.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

- 적극적 업무수행중 사소한 잘못은 면책, 경미한 지적사항 현지조치 확대
- 무사안일 근무행태 감사 및 처분 강화
- 업무처리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발굴·격려

□ 적극행정 면책

- 적극적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사소한 잘못은 적극행정 면책요건(공익성, 타당성, 투명성) 여부를 심사하여 면책 또는 감경 조치
- 면책대상 처분 : 징계(징계부가금) 또는 문책요구
 - ※ 징계가 아닌 주의, 훈계 등 처분은 제외

□ 경미한 지적사항 현지조치 확대

- 경미한 사항으로 현지에서 시정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
 - 시정요구 : 내용에 대해 서로간에 다툼이 없고,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
 - 추징·회수·보전 등 재정상조치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며
 - 감사기간중 시정완료 또는 감사종료후 3일이내에 시정가능한 사항
 - 주의요구 : 처분요구의 실효성이 적고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
 - 행위자의 고의·중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
 - 경미한 절차위반 사항 또는 절차를 위반하였으나 사후조치(협의, 승인 등) 가능한 사항 등
 - 과거의 경미한 위법 부당한 행위로서 개선방안을 이미 마련하였거나 마련중에 있는 사항, 단기간 업무지연 처리사항 등
- 현지조치 제외대상
 - 즉시 시정이 불가능하여 장기간 사후관리가 필요하거나 조사가 미진한 사항
 - 지적내용과 대상금액은 현지조치 대상이 되나 다수의 국민과 관련이 있는 사항
 - 관련자에 대한 조치(주의요구 등)가 필요한 사항

□ 무사안일 근무행태 감사 및 처분 강화

- 무사안일 근무행태 감사대상
 - 능동적인 대응 없이 선례답습 ·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사례
 - 책임 전가행위(불필요한 질의, 협의 등)로 민원처리를 지연한 사례
 - 주요시책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조치를 태만히 한 사례

- 일 안하는 직원의 업무처리 사항 등

○ 지적될 경우 신분상 조치 확행

□ **업무추진 우수 사례 및 우수 공무원 적극 발굴, 격려**

- 예산절감, 창의적 업무수행 등으로 구정에 기여도가 높은 우수사례 및 공무원 적극 발굴
-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는 표창추천 등 격려하고 우수사례는 청렴교육 등을 통해 전파

5. 감사 거버넌스 구축

- 주민의견 수렴 및 공개, 홍보 강화
- 구민명예감사관 및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
- 수감기관과의 소통 강화
- 서울시·자치구 감사기구와의 협력 강화

□ **주민의견 수렴 및 공개, 홍보 강화**

○ **감사관련 주민의견 수렴**

- 청렴포털, 홈페이지, 구의회의원 이메일 등을 통해 감사계획 공개 및 의견접수 안내
- 감사기관 및 감사사항에 대한 주민불편사항, 비리, 제도개선 사항, 건의사항 등

○ **감사결과 공개 및 주민홍보 강화**

- 공개내용 : 감사대상, 감사계획, 지적사항, 처분요구 등 감사사항 전반
 - ※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비공개대상 정보 제외
- 공개방법 : 청렴포털, 서울행정시스템, 구의회의원 이메일 등
- 주요 성과에 대하여는 언론 등에 적극적인 홍보 실시

□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

- 참여분야 : 회계·환경·건설·정보통신 등 전문지식,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
- 참여전문가 : 관련분야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
- 참여방법 : 감사담당자로 위촉, 전문분야 감사지원 및 자문

□ 수감기관과의 소통 강화

○ 감사마감회의 및 간담회 실시

- 추진시기 : 감사마감 전후
- 참석대상 : 감사담당관, 감사반, 수감기관·부서장, 팀장, 직원 등
- 내 용
 - 자체감사 운영방식 등에 대한 수감자 체감 의견 수렴
 - 감사관련 건의사항, 애로사항 등 청취
 - 지적사항 재발방지방안 등 토론

○ 감사 소통채널 마련, 운영

- 감사반과 수감기관(수감직원 포함)이 감사운영과 관련하여 자유로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채널 마련
- 내용 : 감사정보 제출, 부패행위 신고, 감사운영 방향 등 의견
- 방법
 - 공문서, 감사 주관자 이메일, 메모보고 등 활용
 - 의견에 대한 답변 및 감사실시후 결과 통보

□ 2016년도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대비

- 목 적 :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적용대상기관의 자체감사활동을 심사하여 자체감사의 개선」 발전을 유도하고 국가 전체의 감사역량 제고
- 심사대상기관 : 기초지자체는 2016년부터 인구 40만이상에서 30만이상 지자체로 심사대상 확대로 우리구 포함됨
- 심사내용 : 감사조직 및 인력운영, 감사활동의 성과,사후관리 등

- 심사결과 후속조치 : 부진기관에 대한 자체감사활동 전반 감사실시 및 개선조치요구, 감사부서의 장 교체 권고
- 심사내용 ; 4개 분야 27개 심사지표(지표 별첨)
 - 감사조직 및 인력운영의 적정성(10개지표, 20%)
 - 감사활동의 적정성 (10개지표, 40%)
 - 감사성과(3개지표, 30%)
 - 사후관리(3개지표, 10%)
- 서울시 종합청렴도 평가(인센티브)의 자체감사활동 평가지표와 병행하여 심사지표 및 측정방법에 맞게 업무추진
- 우리구 취약 지표 보완을 위해 재무과 소관인 '계약심사 업무'의 감사담당관 이관(2015. 2월예정)

□ 서울시 .자치구 감사기구와의 협력 강화

- 공통 취약분야, 토착비리, 사각지대 등에 대한 시·구 합동점검 및 공동 협력사업 적극 참여
- 감사방향, 전략 등 감사정보 교류 및 공유, 우수사례 벤치마킹

IV 행정사항

□ 감사계획 통보

- 연간계획 : 전부서
- 감사별 세부실시계획
 - 통보시기 :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
 - 대 상 : 감사대상기관(부서)

붙임 : 1. 2015년도 월별 감사계획
2.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지표. 끝.

2015년도 월별 감사계획

월 별	구 분	감사분야	수감부서	주관
2월	특 정	- 민간위탁사무 실태점검	해당부서	방남숙
3월	종 합	- 각종 사업추진 및 민원처리 실태 - 예산집행 실태 전반 - 기타 부서운영 등 업무전반	청소행정과	최지영
4 ~ 5월	특 정	"	민간위탁사무 실태점검 결과 감사가 필요한 분야	방남숙
6월	종 합	- 동행정 업무전반	신촌동, 홍제2동, 홍은2동, 남가좌1동	이소연
9~10월	종 합	- 각종 사업추진 및 민원처리 실태 - 예산집행 실태 전반 - 기타 부서운영 등 업무전반	건설관리과	박형근
11월	종 합	"	환경과	이소연
12월 ~1월	감사이행실태	-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이행결과 확인		최지영

수시	일상감사	- 주요정책, 계약, 예산업무 등의 적법성, 타당성 등 사전검토	전 부 서	방남숙 이소연 박형근
	청백-e시스템 상시모니터링	- 행정착오 및 부적절한 업무처리 즉시 조치·확인	전 부 서	유미현
매월	e호조시스템 상시모니터링	- 예산 등의 적정 집행 여부	전 부 서	이소연
분기별	업무추진비 공개, 클린카드모니터링	- 업무추진비 적정 공개여부 - 클린카드 적정 사용여부	전 부 서	박기원 유미현

2016년(2015년도 실적) 심사기준(예고)

□ 행정기관 그룹군(중앙행정기관, 광역·교육·기초 자치단체)

⇒ 4개 분야, 27개 심사지표

① 감사조직 및 인력 운영 분야(10개 지표, 20%)

심사항목	세항목	심사지표(정성평가 배점)	배점
자체감사기구	독립성	• 전담감사기구 설치 여부	1
	충분성	• 감사인력 수	2
	전문성	• 감사인의 경력	3
감사기구의 장	독립성	• 개방형 지정 여부	1
		• 외부 임용 여부	2
		• 업무수행상 독립성 확보 노력도(2)	2
	전문성	• 감사부서 전문성 확보 노력도(2)	2
		• 우수인력 유인 노력도(3)	3
감사담당자	전문성	• 감사교육훈련 이행실적	2
		•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확보 노력도(2)	2

② 감사활동 분야(10개 지표, 40%)

심사항목	세항목	심사지표(정성평가 배점)	배점
예방감사활동	충분성	• 일상감사 이행 노력도(2)	8
		•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활성화 노력(2)	2
적정성	적정성	• 범죄발생 건수 및 외부감사 지적 정도	4
		• 감사연인원 정도	2
실지감사활동	적정성	• 감사절차 준수 등 실시의 적정성(7)	7
		• 본부·본청 감사실시 정도(2)	2
		• 감사결과 처리의 적정성(10)	10
감사결과 처리	적정성	•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(2)	2
		• 관계기관 협조 정도(3)	3
감사자원 공유 및 활용	협력성	• 공공감사정보시스템 활용도(2)	6

③ 감사성과 분야(3개 지표,30%)

심사항목	세 항목	심사지표(정성평가 배점)	배점
회계검사	재무조치성과	• 변상, 회수, 시정 등 실적(2)	10
직무감찰	신분조치성과	• 징계, 문책, 주의, 고발 등 실적(2)	10
기타분야	기타 성과	• 개선요구사항 및 모범사례 발굴 실적(2)	10

④ 사후관리 분야(3개 지표,10%)

심사항목	세 항목	심사지표(정성평가 배점)	배점
사후관리	충분성	• 자체감사 지적사항 집행도	4
		• 외부감사 지적사항 집행도	3
감사결과 공개	적정성	• 자체감사 결과 공개 정도(2)	3
		• 감사원 감사결과 공개 정도(1)	1